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1
----------	------

발의연월일 : 2023. 8. 25.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박영동 의원,
양은숙 의원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 시 신속히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 등을 쉽게 찾고 사용가능케 함으로써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수 및 설치·관리자로 책무 부여 범위 확대 (안 제4조)
- 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적용대상 신설(안 제5조)
- 다. 공중화장실 금지행위 신설(안 제9조의2)
- 라. 개방화장실 지정요청 시 지정 가능 규정 신설(안 제12조)
- 마.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기준 신설(안 제14조~안 제15조)
- 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비상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

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있다”를 각각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외)

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필요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안전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비용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관리인에 대한”을 “따른”으로,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 중 “설치한 자는”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로, “그를 관리”를 “관리”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지행위)

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전기, 수도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도취)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제10조 중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을 “관리인은”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시”를 “평상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공중”을 “사람들”로 한다.

②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영 제8조에 따라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이동·간이화장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를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를 “비치·제공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화장실”을 “이동·간이화장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을 “사람은 행사 등이 끝났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⑤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 를 “지켜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점검·개선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기준 및 금액” 을 “부과기준”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 기준

(단위 : 만 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5.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 관리 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소속			
설치 관주	설치 주체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직급			
	관리 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 용	유아 용	동양 식	서양 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 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 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u>위생편의</u> 와 <u>복지증진</u>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안전한 사용</u> <u>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 · 복지증진</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 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 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비상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 ·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 · 관리자의 책무) <신 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군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

--.

1. -----

--- 할 것
2. -----
----- 할 것
3. -----
----- 있을 것
4. -----

----- 있을 것

<삭 제>

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신 설>

<신 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외)

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필요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안전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비용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한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

-----.

② 제1항에 따라 -----
---- 사람 -----

----.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 따른 -----
-----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

-----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
관리---

제9조의2(금지행위) ① 공중화장실 등

을 이용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호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전기, 수도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도취)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
관리인은 -----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항상 -----
-----, --- 평상시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법 제9조-----

-----.

②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

② 제1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니더라도 영 제8조에 따라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사람들-----

-----.

제4장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4조(이동·간이화장실 설치) ① --

사람 -----
-----.

-----.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
-----.

1. -----

----- 할 것
2. -----
----- 할 것
3. -----
----- 할 것

4. (생 략)

<신 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4. (현행과 같음)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③ 이동·간이화장실-----
-----.

1. -----
----- 지정할 것

2. -----
-----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 비치
· 제공할 것

④ ----- 사람은
행사 등이 끝났을 -----
-----.

⑤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이내에 별지 제2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
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
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
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1. 2. (생 략)

<신 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별표 1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
-----.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
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법 제11조제3
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사
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
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
다.

제17조(준수사항) -----

----- 지켜야 -----.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
고 제공하여야 한다.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
음)

4. 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점
점·개선명령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부과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른다.

별표 1

1. 일반 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
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
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
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일반 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21조제1항 제1호	20	40	6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법 제21조제1항 제2호	10	20	3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20	40	6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 한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
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
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
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
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
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
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
수로 한다.

2. 개별 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 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21조제2항제1호	20	40	6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법제21조제2항제2호	10	20	3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제21조제2항제3호	20	40	60
5.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전 경 사 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소속				
주관부처 주관기관 주관인	부지	화장실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면적	면적	남	여	장애	성인	유아	동양	서양	유료	무료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관 리 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								
구 모		부지	화장실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면적	면적	남	여	장애	성인	유아	동양	서양	유료	무료
편의시설		세면	난방	냉방	환풍	화장지	비누	수건	탈취제	청소도구함	기타	
		시설	시설	시설	기	(자동		(에어	(방향	내부	외부	
편의시설		세면	난방	냉방	환풍	화장지	비누	수건	탈취제	청소도구함	기타	
		시설	시설	시설	기	(자동		(에어	(방향	내부	외부	
시설관리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별지 제1호서식

전 경 사 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소속				
주관부처 주관기관 주관인	부지	화장실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면적	면적	남	여	장애	성인	유아	동양	서양	유료	무료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관 리 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								
구 모		부지	화장실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면적	면적	남	여	장애	성인	유아	동양	서양	유료	무료
편의시설		세면	난방	냉방	환풍	화장지	비누	수건	탈취제	청소도구함	기타	
		시설	시설	시설	기	(자동		(에어	(방향	내부	외부	
편의시설		세면	난방	냉방	환풍	화장지	비누	수건	탈취제	청소도구함	기타	
		시설	시설	시설	기	(자동		(에어	(방향	내부	외부	
시설관리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관리사항	년월일
안전관리		지정	비상벨		CCTV							
		여부	(설치수)		(설치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20. 일부개정, 2023. 7. 21. 시행)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민간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11. 일부개정·시행)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2. 10. 일부개정, 2021. 12. 23. 시행)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